

제주문화예술 지원사업 2차 공모 안내

1. 공통 안내사항

Ⅰ. 2022년도 주요 변경 내용 4

Ⅱ. 2022년도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6

Ⅲ. 공통 안내사항 7

Ⅳ.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사용안내 13

2. 2022년 지원사업 2차 공모 내용

Ⅰ. 제주원로예술인회고지원 16

Ⅱ. 문화예술연구 및 비평지원 18

Ⅲ. 창작역량강화지원 20

Ⅳ.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22

Ⅴ. 예술공간지원 26

Ⅵ. 국제예술교류지원 29

1. 공통 안내사항

Ⅰ. 2022년도 주요 변경 내용
Ⅱ. 2022년도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Ⅲ. 공통 안내사항
Ⅳ.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사용안내

2022

※ 지원자 책임신청제 운영
- "지원자 책임신청제"는 지원신청 시에 예술인(단체)가 예술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예술인(단체)의 지원 신청 내용을 신뢰하고, 이를 기반으로 심의를 진행합니다. 부정확한 정보와 자료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자의 사업수행역량 확인을 위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내정보 방〉 내 회원정보'를 작성 및 최신 정보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 의무사항
- 표준계약서 사용
- 세금 신고 및 납부의 의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의 의무
- 지적재산권, 저작권, 초상권 보호
- 성희롱, 성폭력 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
- 주최, 주관, 후원 표기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사용
-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보조금 사용 및 정산 안내'에 따른 사업 수행
-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전문가 평가, 행정평가, 현장 모니터링 등) 협조

2022년도 주요 변경 내용

1. 사업유형 개편

2021년				2022년		
Ⅰ. 기초예술 창작활성화	예술창작 활동지원	신진예술인창작활동지원	⇒	Ⅰ. 기초예술 창작활성화	예술창작 활동지원	문학작품집발간지원
		일반예술창작활동지원				예술창작활동지원
		우수기획창작활동지원				장애예술인창작활동지원
		장애예술인창작활동지원				우수창작활동지원
		제주원로예술인지원(구술채록, 회고)			예술창작 기반지원	제주원로예술인회고지원
		문화예술연구 및 비평지원				문화예술연구 및 비평지원
		예술활동기록지원				창작역량강화지원
	예술창작 준비지원	창작활동준비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창작역량강화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예술공간 지원	공연예술공간활성화지원
	예술공간 지원	공연예술공간활성화지원				창작공간프로그램지원
		창작공간프로그램지원				작은예술공간프로그램지원
		작은예술공간프로그램지원		Ⅱ. 국제예술 교류활성화	국제예술교류지원	
Ⅱ. 국제예술 교류활성화	국제예술교류지원			Ⅲ. 예술 가치 확산	공공예술지원	

2. 지원신청 자격 완화

2021년			2022년	
유형	지원자격	⇒	유형	지원자격
국제예술교류지원	(개인, 단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실적		국제예술교류지원	(개인, 단체) 최근 5년간 2회 이상 실적
창작역량강화지원	(단체)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실적		창작역량강화지원	(단체) 실적이 없어도 지원 가능

3.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주요변경내용

구분	2021년		2022년
지원유형 및 규모	– 상주단체: 8천만원~최대 1억5천만원		– (유형 1)상주단체: 8천만원~최대 1억2천만원 – (유형 2)예비상주단체: 4천만원~최대 6천만원
유형 별 수행내용	– 필수: 신작공연 1작품/ 레퍼토리 1작품/ 퍼블릭프로그램 (2회 이상 공연 의무) – 선택(권장) : (도내외)상주단체 간 교류 · 협력/ 조직역량강화	⇒	**[(유형 1) 상주단체]** – 필수: 신작공연 1작품/ 레퍼토리 2작품/ 퍼블릭프로그램(3회 이상 공연 의무) – 선택(권장): (도내외)상주단체 간 교류 · 협력 **[(유형 2) 예비상주단체]** – 필수: 신작공연 1작품/ 레퍼토리 1작품 ※ 신작발표는 선정 후 별도 협의 (2회 이상 공연 의무) – 선택(필수): 퍼블릭프로그램 or 조직역량강화 중 택1
휴식년제 도입	– 해당없음		– 2022년 기준, 연속 3년 수혜단체인 경우 1년 휴식년 적용(2025년)
회계검사	– 권장		– 필수 이행(수수료 예산편성)
신청–교부–정산 시스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지원신청) – e–나라 도움(교부, 정산)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4. 사업유형의 통합, 폐지, 변경

구분	주요내용	2021년	2022년
통합	개인, 단체의 발표 사업 통합	신진예술인창작활동지원 일반예술창작활동지원	예술창작활동지원 ※ 경력 단계별로 세분화
	제주예술인복지사업으로 통합	창작활동준비지원	창작준비금 지원
폐지	2021년 시범 운영 사업의 폐지	제주원로예술인구술채록지원 예술활동기록지원	폐지
변경	사업 유형명 변경	우수기획창작활동지원 제주원로예술인지원	우수창작활동지원 제주원로예술인회고지원

5. 지원사업의 발표 양식 다각화

–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예술환경을 반영하여 기존 작품 발표 양식 외에 야외 공간을 활용한 예술활동 및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예술활동 등 다양하고 유연한 방식의 예술활동 지원

2022년도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단위: 백만원)

지원사업 유형			분야				신청주체		지원자격 (공통: 제주 거주 또는 소재)	지원 규모	공모
			문학	시각	공연	다원	개인	단체			
Ⅰ. 기초예술 창작 활성화	예술 창작 활동 지원	문학작품집발간지원	●	–	–	–	●	–	(A형) 등단 후 5년 이하	4	1차
									(B형) 등단 후 6년 이상 15년 이하		
									(C형) 등단 후 16년 이상		
		예술창작활동지원	–	●	●	●	●	–	(개인A형) 경력 5년 이하	3	
									(개인B형) 경력 6년 이상 15년 이하	5	
									(개인C형) 경력 16년 이상	6	
			●	●	●	●	–	●	(단체A형) 설립 3년 이내	3	
									(단체B형) 설립 4년 이상, 최근 3년간 3회 이상 실적	5~15	
		장애예술인창작활동지원	●	–	–	–	●	–	장애예술인	4	
			–	●	●	●	●	–		5	
			●	●	●	●	–	●	장애예술단체	5~15	
		우수창작활동지원	●	●	●	●	●	●	(단년)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예술인, 단체	최대40	
			●	●	●	●	●	●	(다년)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예술인, 단체	최대50	
	예술 창작 기반 지원	제주원로예술인회고지원	●	●	●	●	●	●	만 70세 이상, 경력 30년 이상	10~30	2차
		문화예술연구 및 비평지원	●	●	●	●	●	●	최근 5년간 발간 1회 또는 발표 3회 이상	5~10	
		창작역량강화지원	●	●	●	●	–	●	예술단체	5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	●	–	–	●	설립 3년 이상의 공연 분야 전문예술단체	80~120	
	예술 공간 지원	공연예술공간활성화지원	●	●	●	●	●	●	공연예술 발표 공간(소극장)	10~25	
		창작공간프로그램지원	●	●	●	●	●	●	기초예술 창작공간	10~40	
		작은예술공간프로그램지원	●	●	●	●	●	●	최근 3년간 2회 이상 실적, 복합예술공간	3~7	
Ⅱ. 국제예술 교류 활성화	국제예술교류지원		●	●	●	●	●	●	최근 5년간 2회 이상 실적	최대20	
Ⅲ. 예술 가치 확산	공공예술지원		●	●	●	●	–	●	(단년) 공공예술 관련 사업수행 1회 이상 실적	최대30	1차
									(다년) 공공예술 관련 사업수행 1회 이상 실적		

※ 제주문화예술재단 부서별 지원사업은 별도 공지 예정

공통 안내사항

1. 공모 및 사업기간

(1) 1차 공모

- 공모기간 : 2021. 12. 27.(월) ~ 2022. 1. 13.(목) 18:00
- 접수기간 : 2021. 12. 29.(수) ~ 2022. 1. 13.(목) 18:00
- 사업기간 : 2022. 2. 1.(화) ~ 12. 31.(토)

(2) 2차 공모

- 공모기간 : 2022. 1. 17.(월) ~ 2. 4.(금) 18:00
- 접수기간 : 2022. 1. 19.(수) ~ 2. 4.(금) 18:00
- 사업기간 : 2022. 3. 1.(화) ~ 12. 31.(토)

2. 지원신청 자격

- 예술인 및 예술단체(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개인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선정된 개인은 최종결과 발표 후 10일 이내에 신청자격 증빙자료를 필수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자격 미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됨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증빙서류: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
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소재의 기초예술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를 증빙하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1종 필수 제출

※ 사업유형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다르니 해당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조

3. 지원신청 불가 단체 및 개인

(1) 지원신청 개인(단체) 부적격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립 · 공립(도 · 시 · 구 · 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신청 주체인 공공 공연장은 예외
- 국고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정부 · 지자체 및 산하 국립 · 공립 또는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국고 또는 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단체
- 주 목적이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 · 종교기관, 친교기관 등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 · 휴학생(대학원생 가능)
  ※ 단, 대학(교) 전 학기 이수한 졸업유예자 지원 가능(졸업예정증명서 등 증빙자료 필수 제출)
- 최근 3년간(2019~2021년) 제주문화예술재단 생활문화예술 관련 지원사업 참여 및 수행 이력이 있는 단체

(2) 과거 지원금 수혜 경력 관련 부적격 기준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개인 · 단체
- 재단으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 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인 · 단체
- 신청 접수기한까지 전년도 지원사업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개인 · 단체
- 2021년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개인 · 단체

※ 단,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사업유형에 한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코로나19로 인한 포기 등)는 예외로 함

(3) 관련 규정, 법률 및 지침 위반행위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 단,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희롱 · 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자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 관리규정」 제7조제5항)
- 「예술인복지법」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개인 · 단체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개인 · 단체
-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관련된 개인 · 단체

4.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및 부적격시 처리 방법

(1) 사업목적 및 내용 부적격 기준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사업
- 졸업작품 및 학위청구 관련 발표 사업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경연대회, 공모사업[시상금, 상금 심사비, 상품(권) 지급 불가]
- 참가비(출품료)를 받는 사업
- 지원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 활동이 아닌 영리 목적의 사업
- 사업 수행 인원 중 50% 이상이 초 · 중 · 고 · 대학생으로 구성된 사업
- 보조사업자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업
- 타 지원사업 선정사업

(2) 예산 부적격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의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받는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제주시, 서귀포시 직접 지원 사업

※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참조

(3)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응모 시 처리 방법

- 행정심의에서 탈락처리 및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알림
- 심의의결 후 지원 제외 및 제한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5. 심의배제 사항

(1) 지원신청자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2) 신청제한 사항(부적격자, 부적격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3) 지원금 범위를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4) 지원신청서 미제출, 사업별 필수제출자료 미제출

(5) 타 사업에 지원신청(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업유형 잘못 선택)

(6)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유형의 지원신청서 및 전년도 신청서 제출)

(7) 지원신청서의 주최, 주관이 명확하지 않거나, 지원신청자(단체)가 주체가 아닌 경우(대규모 행사의 부속 사업 등)

6. 지원사업 예산편성 안내

(1)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만 지원함

※ 단, 일부 사업유형은 운영경비 지원 가능

(2) 교부 신청 전 집행한 예산에 대해 보조금 및 자부담 예산으로 보전할 수 없음

※ 단, 심의기간 중 진행되는 사전사업에 대해서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3) 교부 신청시 지원신청 당시의 사례비(출연료, 원고료 등) 예산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음

(4) 자부담 의무 없음

※ 자율적으로 자부담을 편성하는 것은 가능하나, 우대 등의 추가 조건 없음

(5) 지원 신청 시 자부담을 편성하여 선정되면 확정된 지원금에 비례하여 자부담을 유지하여야 함

지원신청 시				지원금 확정 시		
신청예산 (100%) (C=A+B)	신청지원금 (90%) (A)	신청자부담 (10%) (B)	》	확정예산 (100%) (F=D+E)	확정지원금 (90%) (D)	확정자부담 (10%) (E)
1,112만원	1,000만원	112만원이상		778만원	700만원	78만원이상

(6) 자부담은 반드시 교부신청 전 입금하고 사업기간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미집행 시 반납하여야 함

(7) 개인 신청자 본인의 사례비 편성 불가

(8) 단체 대표자 사례비는 '소득세법'에 의거 대표자의 개인경비 처리가 가능한 법인단체이고, 직접적인 활동(기획, 연출 등)이 확인되어야 편성 가능 (편성 가능 금액은 사업유형별로 확인)

※ 지원사업 예산편성 내용

세목	항목	세부 내용
일반수용비	사례비	출연, 기획, 연출, 평론 등 개인 사례비 ※ 원천세를 포함하여 세전 금액으로 편성
	홍보 및 마케팅	홍보물 제작, 디자인, 온 · 오프라인 홍보 등
	제작비	무대, 세트 등 제작
	재료비	작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발간비	도록, 서적 발간 등
	기타운영비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기타 비용(운송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료 등
여비	여비	국내 · 국외 교통 및 체재비(항공, 숙박 등)
임차료	대관료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부대시설 등 대관료
	임차료	장비, 물품, SW(소프트웨어) 등의 임차료 ※ 사업기간 외 장비, SW 임차 시, 비용 불인정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예술인고용보험 사업자부담금 ※ 지원신청 시에는 편성하지 않고, 선정 이후 편성

사용불가 항목	세부 내용
일상적인 운영경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용역비	사업의 일부 및 전부를 재위탁하는 방식의 용역비 ※ 단체 출연료(세금계산서 발행)는 용역비로 인정
자본적 경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사업추진비	출연진 식대, 다과비, 업무추진비 성격의 식대, 행사기념품 구입비 등
행사 답사비 등 비용	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재교부 사업 관련 경비	상금, 상금 심사비 등
기타 사항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과세사업자는 지원금으로 부가가치세 사용 불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각종 수수료(인증서발급 수수료, 송금수수료 등)

7.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자 책임신청제 운영

– “지원자 책임신청제”는 지원신청 시에 예술인(단체)가 예술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예술인(단체)의 지원 신청 내용을 신뢰하고, 이를 기반으로 심의를 진행합니다. 부정확한 정보와 자료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자의 사업수행역량 확인을 위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내정보방>내 회원정보’를 작성 및 최신 정보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 의무사항

– 표준계약서 사용
– 세금 신고 및 납부의 의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의 의무
– 지적재산권, 저작권, 초상권 보호
– 성희롱, 성폭력 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
– 주최, 주관, 후원 표기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사용
–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보조금 사용 및 정산 안내’에 따른 사업 수행
–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전문가평가, 행정평가, 현장 모니터링 등) 협조

(1) 지원신청자는 반드시 지원사업별 공모내용(신청자격, 대상사업, 제출자료, 제출방법 등)을 확인 후 지원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신청서에 개인 및 단체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지원결정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지원신청자 활동실적 증빙서류가 지원신청 시 제출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4) 지원신청서, 필수제출서류 등이 누락되었을 때 심의배제됩니다. 제출 전 심의배제 사항 등을 점검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22년 제주문화예술재단 2차 공모 사업 중 1개 사업만 지원신청 가능하고, 중복지원사업 유형 포함하면 최대 2개까지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6) 2022년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1,2차 공모에 2개 이상 사업에 선정된 경우 중복지원사업 유형 포함하여 2개 사업만 추진할 수 있고, 나머지 사업은 포기하여야 합니다. 단, ‘공공예술지원’과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은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타 지원사업 유형과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지원사업: 3개 사업

– 제주원로예술인회고지원, 문화예술연구 및 비평지원, 창작역량강화지원

(7) 지원신청자는 동일 사업을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의 여러 유형에 복수로 신청할 수 없으며, 복수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 지원결정 후 심의위원회가 동일하다고 판단할 때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8) 공모 심의기간 중에 진행되는 지원사업은 최종 지원결정 공지 후 재단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후 지원이 가능합니다.(선정 후 재단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

(9) 선정 이후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사업의 규모가 현저히 축소될 경우 보조금이 취소 또는 삭감될 수 있습니다.

(10) 선정된 보조사업은 사업 평가(전문가평가, 행정평가, 현장모니터링 등) 및 만족도 조사(관람객, 보조사업자)를 진행합니다. 이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1)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지원신청단체에 없는 경우 지원신청 당시 원작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는 문화예술계 성희롱 ·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서약서를 받고 있으니, 지원신청서 제출 시 서명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원사업자가 사업 포기를 신청한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차순위 후보자를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원신청서 제출 후
심의배제 사항에 해당되거나 감점이 적용되는 등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Ⅳ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사용안내

1. 지원신청방법

(1)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s://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이외의 전자 우편, 우편, 방문 접수 불가합니다.
  - 단체사업은 대표자 개인 혹은 참여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신청 접수시 심의배제)
  - 단체 지원신청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단체 대표자(개인)' 회원가입 후 '단체' 회원가입 및 지원신청 가능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내정보방'에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를 신청 시점 기준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개인 · 단체의 명칭, 대표자명, 주소, 경력사항 등)
- 2022년도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은 지원신청부터 심의, 교부, 정산의 전체 과정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으로 수행합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보조금 주관기관] '제주문화예술재단' 선택	》	[신청 가능한 지원 사업] 공모사업 확인 후 신청할 '신청분야(장르)' 선택
신청사업 정보 입력	》	[최종 첨부파일 확인] ※분야별 지정된 지원신청서(양식) 및 필수 제출자료를 작성하여 첨부	》	[지원신청서 최종제출하기] 클릭 지원신청 완료

2. 사용시 유의사항

(1) 지원신청 마감 당일은 신청자가 몰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과부하가 예상되니 사전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시스템 신청 시 지원신청서 미제출, 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 신청서 양식 사용)은 심의에서 배제됩니다.

※ 단, 제출된 첨부파일 내 이미지 등이 손상된 경우 심의 전까지 보완요청 할 수 있음
(재단 담당자 요청일로부터 24시간 이내 보완제출하여야 함)

(3) 지원신청서 제출 이후라도 신청 마감일 18시 이전까지 수정 제출이 가능하니, 지원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작성내용 및 첨부파일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제출된 지원신청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년 지원사업 2차 공모 내용

Ⅰ. 제주원로예술인회고지원

Ⅱ. 문화예술연구 및 비평지원

Ⅲ. 창작역량강화지원

Ⅳ.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Ⅴ. 예술공간지원

Ⅵ. 국제예술교류지원

제주원로예술인회고지원

• 제주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원로예술인 생애사 기록 및 회고사업을 통해 제주문화예술사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지원 방침

• 제주 원로예술인의 아카이브 자료 집적 및 공유

지원 신청 자격

구분	지원자격
개인	만 70세 이상, 예술활동경력 30년 이상 제주 소재(거주) 원로예술인(공고일 기준)
단체	만 70세 이상, 예술활동경력 30년 이상 제주 소재(거주) 원로예술인(공고일 기준)이 소속된 예술단체 또는 제주원로예술인지원 사업추진역량을 가진 제주 소재 예술단체

※ 개인 · 단체 모두 반드시 사업전담인력(ex 연구원, 기획자 등) 2인 이상 필수로 두어야 하며 이에 따른 예산 편성 가능
※ 사업전담인력(ex 연구원, 기획자 등) 이력 및 해당 원로예술인 공적 조서 필수 제출

세부 분야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지원 내용

• 제주원로예술인 회고작품집, 회고도록 등 발간
※ 단순한 창작집 발간은 지원 불가
– 회고작품집 및 회고도록 발간 및 연계 행사(출판기념회 등) 등 프로그램
※ 선정자(단체)는 사업비 교부 전에 사업 컨설팅에 필수 참석하여야 함
(관련 사항은 사업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 사업 완료 후 작품집 및 관련자료 제출
– 작품집 3부, 작품집(PDF), 작품집 소스 별도 제출(원고, 이미지 등)

지원 규모

• 최소 1,000만원 ~ 최대 3,000만원

지원 항목

• 작품집 및 작품도록 발간에 필요한 출판비
• 사업전담인력(기획자 등) 및 법인 단체 대표자 사례비(직접적인 활동(기획, 연출 등)을 한 경우)는 총 지원금의 20% 이내 편성 가능
• 연계 행사 등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 단체운영 · 경상 경비는 지원불가

제출 자료

① 지원신청서 (지정서식 다운로드 : 재단 홈페이지)
– 사업전담인력 이력 및 해당 원로예술인 공적 조서 등 기재
② 해당 예술인의 30년 이상의 예술활동 실적 증빙자료 (우편제출)
– 우편 제출: 우편물은 마감일(22.2.4.) 소인 인정
– 제출처: 제주시 동광로 51, 제주문화예술재단 6층 예술지원팀
③ (단체의 경우)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법적 증빙서류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본

공통 유의 사항

•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가 누락됐을 경우 심의에서 탈락됨
• 첨부파일 (URL링크, 영상, 음원파일 등)이 최종 제출하는 지원신청서 내에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 필수, 선택 제출서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지원신청시 반드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지정양식 준수 필수/ 총 용량은 최대 100MB 까지 첨부 가능)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내정보방'내 회원정보' 반드시 작성 및 최신 정보로 수정

심의 절차

1차 행정심의	>	2차 서류 심의	>	3차 인터뷰 심의	>	4차 심의
신청 자격 및 필수 제출자료 확인		**지원신청서 심의**		**인터뷰**		**전문가 종합 심의**
지원 부적격자 및 필수 제출자료 미제출 시 탈락		심의기준에 따른 서류 심의		심의기준에 따른 인터뷰 심의		지원금 의결

※ 심의위원회 5인 이상 구성 시 최고, 최저점 제외하여 평균점수를 산술
※ 코로나19 관련 정부대응 조치에 따라 심의방식과 절차가 변경될 수 있음
※ 2021년 지원사업자가 2022년에 지원신청한 경우, 심의위원 심의 결과에 전년도 평가 등급에 따른 점수(+3점~-2점)를 합산
※ 서류 심의를 통해 인터뷰 심의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인터뷰 대상자는 개별 연락 예정

심의 기준

심의기준	가중치	주요 심의내용
사업목적의 적합성	20	•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은 적절한가?
사업의 예술성/충실성	30	• 사업계획은 주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원로예술인으로서의 활동상과 예술적 성취가 어떠한가? • 원로예술인으로서 지역예술사의 예술적 · 학문적 기여도와 기록할만한 가치가 있는가? • 예산은 사업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
사업 수행역량	30	• 신청 예술인(단체)은 신청 사업을 수행할 역량이 있는가? • 사업전담인력의 역량 및 경력이 사업을 수행할 만한가?
기대되는 성과	20	•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문화예술연구 및 비평지원

• 제주예술계 창작활동에 대한 담론 생산 기반 강화

지원 방침	• 지역 문화예술 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창작활동에 대한 연구 및 비평지원 • 사업의 예술성, 사업 수행역량, 성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세부 분야	• 연구, 비평, 학술
지원 신청 자격	• 최근 5년간(2017~2021년) 문화예술 연구 · 평론 전문 간행물을 1회 이상 발간하거나 연구 · 평론발표 3회 이상 실적이 있는 제주 소재(거주) 개인 또는 단체 ※ 개인 신청인 경우 2인 공동연구 · 집필 신청 가능 (단 대표 1인의 명의로 신청하되 신청서류에 반드시 공동연구와 집필자 정보 명기)
지원 대상	• 2022.12.31.까지 완료가 가능한 사업 – 예술비평(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서적 · 간행물 발간 및 예술비평 관련 활동(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등) ※ 디지털 매체를 통한 비평활동 포함
	• 지원신청할 수 없는 사업 – 학위논문집, 에세이, 교습서, 번역본 등 연구작업이 동반되지 않는 단순 작품집, 다수 연구자 저술 모음집 – 비평전문지가 아닌 일반적인 미술잡지 발간 – 단체 회보 성격의 발간물(협회지) 및 연례 학술 행사 – 전작도록, 전시도록 등 화집 발간 – 디지털 매체를 통한 단순 사업홍보활동, 단순 감상문, 타인의 비평문을 단순 게재하는 활동
지원 규모	• 500만원 ~ 1,000만원
지원 항목	• 비평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직접경비 – 신청사업의 내용과 규모,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결정 – 단체의 운영 · 경상경비는 지원불가 ※ 법인단체 사례비(직접적인 활동(기획, 연출 등)을 한 경우)는 총 지원금의 20%이내 편성 가능
제출 자료	① 지원신청서(지정서식 다운로드 : 재단 홈페이지) – 신청개요 – 사업계획서 – 사업 참여 인원 및 문화예술활동 경력 – (단체)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법적 증빙 서류(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 – 사업성과
공통 유의 사항	• 신청 시 제출자료의 누락이 있을 경우 행정심의에서 탈락하므로 유의 • 첨부파일(URL링크, 영상, 음원파일 등)이 최종 제출하는 지원신청서 내에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 제출자료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지원신청시 반드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지정양식 준수 필수/ 총 용량은 최대 100MB 까지 첨부 가능)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내정보방'내 회원정보' 반드시 작성 및 최신 정보로 수정 • 단체의 증빙자료에서 주최, 주관이 다른 경우에 "주관"만 인정

심의 절차

1차 행정심의	>	2차 서류 심의	>	3차 심의
신청 자격 및 필수 제출자료 확인		**지원신청서 심의**		**전문가 종합 심의**
지원 부적격자 및 필수 제출자료 미제출 시 탈락		심의 기준에 따른 서류 심의		지원금 의결

※ 심의위원회 5인 이상 구성 시 최고, 최저점 제외하여 평균점수를 산술
※ 코로나19 관련 정부대응 조치에 따라 심의방식과 절차가 변경될 수 있음
※ 2021년 지원사업자가 2022년에 지원신청한 경우, 심의위원 심의 결과에 전년도 평가 등급에 따른 점수(+3점~–2점)를 합산

심의 기준

심의기준	가중치	주요 심의내용
사업목적의 적합성	20	• 지원사업의 목적과 대상에 부합하는가? •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은 적절한가?
사업의 예술성/충실성	40	• 사업계획은 주제가 명확하며,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사업내용이 얼마나 예술적이고 독창적인가? • 예산의 세부항목과 금액이 사업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
사업 수행역량	20	• 신청 예술인(단체)은 신청 사업을 수행할 예술적 역량이 있는가? • 사업 참여인력의 역량과 사업실적, 경력이 사업을 수행할 만한가?
기대되는 성과	20	• 문화예술 연구 및 평론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 합리적이고 건강한 지역예술계 담론 문화를 형성하는데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창작역량강화지원

• 예술단체의 창작여건 개선 및 창작활동 지원으로 예술활동 역량 제고

지원 방침	• 예술단체의 창작여건 개선 및 역량을 제고하고 자생력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지원 신청 자격	•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예술단체
지원 대상	• 2022.12.31.까지 완료가 가능한 기초예술분야의 예술단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 예술단체 예술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 예술단체 예술경영(기획,홍보,회계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예시) 자체워크숍, 컨퍼런스, 컨설팅, 교육, CoP(학습공동체) 운영 등
지원 규모	• 500만원 (정액)
지원 항목	• 창작역량강화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접 경비 – 제작비, 재료비, 사례비, 임차료, 홍보비 등 ※ 사례비는 외부전문가(자문, 강의 등) 사례비만 편성 가능 (내부 참여인력 사례비 지급 불가) ※ 단체 운영 · 경상경비는 지원 불가
제출 자료	① 지원신청서 – 신청개요 – 사업계획서 – 활동실적자료 –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법적 증빙 서류(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 – 사업성과
공통 유의 사항	• 신청 시 제출자료의 누락이 있을 경우 행정심의에서 탈락하므로 유의 • 첨부파일(URL링크, 영상, 음원파일 등)이 최종 제출하는 지원신청서 내에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 제출자료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지원신청시 반드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지정양식 준수 필수/ 총 용량은 최대 100MB 까지 첨부 가능)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내정보방'내 회원정보' 반드시 작성 및 최신 정보로 수정
심의 절차	1차 행정심의 > 2차 서류 심의 **신청 자격 및 필수 제출자료 확인** > **지원신청서 및 제출 자료 심의** 지원 부적격자 및 필수 제출자료 미제출 시 탈락 > 심의 기준에 따른 서류 및 제출자료 심의 ※ 심의위원회 5인 이상 구성 시 최고, 최저점 제외하여 평균점수를 산술 ※ 코로나19 관련 정부대응 조치에 따라 심의방식과 절차가 변경될 수 있음 ※ 2021년 지원사업자가 2022년에 지원 신청한 경우, 심의위원 심의 결과에 전년도 평가 등급에 따른 점수(+3점~–2점)를 합산

심의 기준

심의기준	가중치	주요 심의내용
사업목적의 적합성	20	• 지원사업의 목적과 대상에 부합하는가? •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은 적절한가?
사업의 충실성/기획력	40	• 사업계획은 주제가 명확하며,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사업내용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기획력이 있는가? • 예산의 세부항목과 금액이 사업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
사업 수행역량	20	• 신청 예술인(단체)은 신청 사업을 수행할 예술적 역량이 있는가? • 창작활동에 대한 예술인의 고민과 표현방식이 명확한가? • 사업 참여인력의 역량과 사업실적, 경력이 사업을 수행할 만한가?
기대되는 성과 및 발전가능성	20	• 신청예술인(단체)의 예술적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가? • 창작활동계획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하며 설득력이 있는가?

Ⅳ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공공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호 협력을 통한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 및 공연 예술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 공연예술단체의 우수작품 제작 · 발표 촉진을 통한 공연장 가동률 제고 및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지원 방침

- 공연단체와 공연장의 지속 가능한 공연예술 창작 파트너십을 통한 공연장 특성화 및 공연단체 콘텐츠 개발
- 신규 상주단체의 사업 참여기회 확대
- 수행 프로그램의 우수성, 실현 가능성,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지원 신청 자격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및 공연 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공연예술단체
- 설립 연한 3년 이상(2019년 이전 설립)의 공연경력이 있는 공연예술단체
- 제주도에 소재하며 제주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공연예술단체

※ 공고일 현재 전문예술법인(단체) 우대

※ 유형 1, 2 모두 신청 자격은 동일함

세부 분야

- 연극: 연극분야(아동, 청소년극, 뮤지컬 포함) 전문극단
- 음악: 실내악단, 교향악단, 합창단, 중창단, 오페라단 등 창작 · 연주 전문단체
- 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전문 무용단
- 전통예술: 음악, 무용, 연희 등 전통예술창작 · 공연전문단체

지원 규모

- (유형 1) 공연장 상주단체: 최소 8천만원~최대 1억2천만원
- (유형 2) 공연장 예비상주단체: 최소 4천만원~최대 6천만원

지원 및 수행 프로그램 내용

- 2022.12.10.까지 공연장과 공연단체가 협력하여 수행하는 예술창작활동 및 공공프로그램 지원
  – 필수 프로그램과 선택 프로그램을 구분, 수행해야 함
  – 수행 프로그램 공연일정은 공연장과 협의하여 주중(평일) 일정으로 우선 배정
  – 사업수행에 따른 평가, 인터뷰, 컨설팅, 워크숍 등에 적극 참여

※ 단,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연일정 및 사업내용 변경이 필요할 시 사전 재단과 협의하여 조정함

- 상주단체별 수행 활동 내용

– (유형 1)상주단체

구분		내용	작품수	공연횟수
필수	신작공연	• 초연 창작품 개발 공연	1작품	3회 이상
	레퍼토리	• 기존 우수작품 레퍼토리 공연	2작품	
	레퍼토리	• 교육 : 지역민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 문화나눔 : 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 기타 : 공연장(지역) 특성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	선정 후 공연장과 협의 후 조정 가능	
선택	(도내 · 외) 상주단체 간 교류 · 협력	• **(도내)** – 공연장 상주단체 간 우수 작품 상호 교류를 통한 지역 내 교류 · 협력 추진 ※ 단 선정 후 공연장–공연단체 간 협의를 통해 세부내용 결정 (공연장, 일정, 규모 등), 최종 결정 여부에 따라 향후 예산 반영 • **(도외)** – 상주단체 페스티벌 및 공연장 상주단체 간 우수 작품 상호교류를 통해 타 지역 관객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공연장 가동률 제고	(권장)	

지원 및 수행 프로그램 내용

– (유형 2)예비상주단체

구분		내용	작품수	공연횟수
필수	신작공연	• 초연 창작품 개발 공연(선정 후, 발표형식 등 별도 협의)	1작품	2회 이상
	레퍼토리	• 우수작품 레퍼토리 공연	1작품	
선택	퍼블릭 프로그램	• 교육 : 지역민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 문화나눔 : 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 기타 : 공연장(지역) 특성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	택 1 (필수) 선정 후 공연장과 협의 후 조정 가능	
	조직역량 강화	• 상주단체 단원의 예술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 공연장 및 상주단체 관계자(기획, 홍보, 마케팅, 회계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 단순 단원 공연 연습 및 단원 간 회의는 불인정		

지원 항목

항목		집행용도	집행가능 항목	편성비율	편성여부
사업비	공연단체 사업비	수행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에 필요한 직접 경비	– 공연 제작 경비 – 퍼블릭프로그램, 상주단체 간 교류 · 협력(상주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경비(예비상주단체) – 프로그램 홍보비 – 기타 관련 필수 경비	50~100%	필수
운영비	공연단체 운영경비	수행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건비성/비인건비성 경비	– 공연장 및 공연단체의 기획 및 행정인력 인건비	0~30%	선택
	공연장 필요경비		– 프로그램 운영, 작품제작, 홍보 · 마케팅, 상주공간 관리, 관객안내 등의 일용임금	0~20%	선택

※ 회계검사 수수료 예산편성 필수(일반수용비 항목)

지원신청액	수수료
4천만원 ~ 6천만원 미만	520,000원
6천만원 ~ 7천만원 미만	563,000원
7천만원 ~ 8천만원 미만	607,000원
8천만원 ~ 9천만원 미만	650,000원
9천만원 ~ 1억원 미만	694,000원
1억원 ~ 2억원 미만	873,000원

– 수수료는 위 표를 참고하고 실제 적용시 변동 가능함

※ 법인단체의 대표자 사례비는 직접적인 활동(연출, 출연 등)을 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비' 20%내 편성 가능
※ 공공연단체의 사업계획(내용, 규모, 소요예산 등), 예술적 성과, 공연장과 공연단체의 매칭 후 사업 기대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및 선정
※ 단체운영 · 경상경비는 지원 불가

참여 공연장

- 제주 소재 공공 공연장으로 참여 공연장은 공고일 별도 공지
  ※ 1개 공연장당 예비상주단체 포함 3개 공연단체까지 매칭 가능하며 공연장 컨디션에 따라 매칭 단체수가 제한 될 수 있음

협약 체결 안내

- 심의 후 매칭이 완료되면 재단이 제시하는 협약서를 준용하여 공연장과 공연단체가 직접 협약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협약서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

구분	세부 수행 내용
(예비)상주단체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관련 제반사항 주체적으로 수행 (작품기획 및 제작, 홍보마케팅, 퍼블릭프로그램 운영, 성과관리 등) – 우수 작품 창작(창작 초연 작품 및 우수 레퍼토리) 개발 노력 – 퍼블릭 프로그램(교육 및 관객 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 실시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관련하여 공연장과 적극 협력을 통한 성과 제고 – 공연장상주단체 간 교류 시 타 공연단체에 대해 적극 협력(홍보 등) – 공연장 가동률 제고 노력 – 보조금 정산 총괄
공연장	– 협약 공연단체에 사무실, 연습실 등 상주공간 무상 제공(제공시설 내용 명기) – 협약 공연단체의 공연장 사용료 면제 및 사용 우선권 부여 – 협약 공연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적극 협력 – 공연장 가동률 제고 노력 – 공연장상주단체 간 교류(상주단체페스티벌 포함)시 타 공연 단체에게도 협약단체와 공일한 혜택 부여(대관료, 연습실 사용료 등 면제 및 편의 제공) – 보조금 정산(협조)

제출 자료

① 지원신청서(지정서식 다운로드: 재단 홈페이지)
– 2022년 사업운영계획 및 과거 주요 활동내역 등 기재
– 최근 3년간(2019~2021년) 신청단체의 활동경력 증빙자료
– 단체의 성격, 설립연도를 알 수 있는 법적 증빙서류(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
※ 설립연도 증빙자료는 해당 공연단체와 동일한 공연단체임이 증명되어야 함

② 프레젠테이션 발표 자료 (자유양식, 발표 5분 이내)

공통 유의 사항

- 신청 시 지원유형을 반드시 확인하고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선택
- 신청 시 제출자료의 누락이 있을 경우 행정심의에서 탈락하므로 유의
- 첨부파일(URL링크, 영상, 음원파일 등)이 최종 제출하는 지원신청서 내에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 제출자료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지원신청시 반드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지정양식 준수 필수/ 총 용량은 최대 100MB 까지 첨부 가능)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내정보방'내 회원정보' 반드시 작성 및 최신 정보로 수정

사업 추진 및 심의 절차

공연장 신청	▶	공연장풀 공지	▶	현장실사
도 문화정책과로 개별 신청		2차 공모 시 안내		공연단체의 공연장 현장실사 기간 운영 (2022.1.19.~1.21. 예정) ※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문의 요망

▼

서류심의(2차)	◀	행정심의(1차)	◀	공연단체 지원신청
심의기준에 따른 서류심의		신청 자격 및 필수 제출자료 확인 (지원 부적격자 및 필수자료 미제출 시 탈락)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으로 개별 신청 ※ 신청 시 공연장 매칭 희망순위 제출

▼

인터뷰심의(3차)	▶	공연장+공연단체 매칭 심의	▶	결과 공지
신청단체 PT발표/심의기준에 따른 인터뷰심의		선정된 공연단체 대상 공연장의 우선순위 제출에 따른 공연장+공연단체 매칭 심의(워크숍) 진행		최종 심의 결과 발표

※ 심의위원회 5인 이상 구성 시 최고, 최저점 제외하여 평균점수를 산술
※ 코로나19 관련 정부대응 조치에 따라 심의방식과 절차가 변경될 수 있음
※ 2021년 지원사업자가 2022년에 지원신청한 경우, 심의위원 심의 결과에 전년도 평가 등급에 따른 점수(+3점~–2점)를 합산
※ 서류 심의를 통해 인터뷰 심의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인터뷰 대상자는 개별 연락 예정

심의 기준

심의기준	가중치	주요 심의내용
수행 프로그램 운영계획	25	• 수행 프로그램의 우수성 – 수행 프로그램의 참신성과 독창성, 차별성, 완성도 – 수행 프로그램 내용(횟수, 규모, 인원 등) 및 추진단계의 구체성 – 해당분야에 미칠 파급효과, 예상 기여도
수행 프로그램의 실현 가능성	25	• 수행 프로그램 계획의 실현가능성 – 사업운영계획, 기획인력, 홍보마케팅, 관객개발 계획 등의 타당성 – 공연장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여부
창작역량 및 활동실적	25	• 공연단체의 최근 활동 실적 및 성과 – 최근 3년간 창작활동 실적 및 성과(신작발표, 레퍼토리 구축, 관객개발, 예술제 참가, 수상실적 등) – 단체에 대한 외부평가(언론 및 예술전문지 공연평 등)
사업운영 역량	25	• 공연단체의 사업운영 역량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또는 사회적기업 여부 – 공연단체 보유인력(예술인, 행정담당 등) 현황 및 단체의 조직운영 및 경영상태 • 예산 계획의 타당성 – 예산 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합리성 – 세부 예산 항목 및 산출근거의 적절성

Ⅴ 예술공간지원

- 지역의 예술공간 여건 조성 및 운영 활성화
- 안정적 창작 거점 확충 및 자생력 있는 공간으로의 성장 기반 마련
- 예술인의 창작, 발표 기회 촉진과 도민 문화접근성 확대

지원방침

구분	지원방침
공통	• 예술공간의 운영 목적이 뚜렷하고,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지원 • 신청사업의 내용과 규모, 기대되는 성과, 공간(시설, 규모 등) 등을 고려하여 선정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공연예술공간 활성화지원	• 공연예술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 지원
작은예술공간 프로그램지원	• 예술을 기반으로 도민과의 접점을 확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창작공간 프로그램지원	• 예술인들의 창작 환경 제공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지원 신청 자격

구분	지원자격
공연예술공간 활성화지원	• 제주 소재 예술 단체 및 공연예술 발표 공간(소극장) ※ 단순 연습실, 대관 전용 시설은 제외
작은예술공간 프로그램지원	• 최근 3년간(2019~2021년) 2회 이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동 실적이 있는 제주 소재 예술 단체 및 복합예술공간
창작공간 프로그램지원	• 제주 소재 예술 단체 및 기초예술 창작공간

지원 내용

- 2022. 12. 31.까지 완료가 가능한 사업
- 사업 수행 중 전문가 인터뷰, 컨설팅, 간담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사업

구분	지원내용 (의무 이행 사항)
공연예술공간 활성화지원	• 공연예술 공간에서 2개 이상의 기획 공연
작은예술공간 프로그램지원	• 복합예술공간 내 소규모 행사(문학행사, 전시, 공연 등) 발표
창작공간 프로그램지원	• 예술인 발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멘토링, 교육프로그램, 발표(전시, 공연) 등) • 지역 커뮤니티, 예술인, 기획자 등 다양한 영역과의 교류 및 협업 프로그램

지원 규모

구분	지원규모
공연예술공간 활성화지원	• 1,000만원 ~ 2,500만원
작은예술공간 프로그램지원	• 300만원 ~ 700만원
창작공간 프로그램지원	• 1,000만원 ~ 4,000만원

지원 항목

구분	지원방침
공통	• 예술공간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 사업전담인력(기획자 등) 및 법인 단체 대표자 사례비(직접적인 활동(기획, 연출 등)을 한 경우)는 총 지원금의 20% 이내 편성 가능
공연예술공간 활성화지원	• 공간 운영비는 지원금의 10% 이내 편성
창작공간 프로그램지원	• 공간 운영비는 지원금의 10% 이내 편성 • 예술인의 창작 활동에 필요한 아티스트피(월 60만원 이내) ※ 활동실적보고서 제출 필수 (별도 공지) ※ 아티스트피를 지급 받은 예술인은 추가 사례비 지급 불가
편성불가항목	• 선정 단체 및 공간 외의 운영 · 경상경비 • 공간의 구입, 임대, 신축 및 개보수 경비 • 고정자산 취득 및 경직성 경비 • 간담회비, 식비, 다과비 등 업무추진비 • 기타 사업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 지침에 부합되지 않는 항목

제출 자료

① 지원신청서(지정서식 다운로드 : 재단 홈페이지)
- 신청개요
- 사업계획서
- 사업 참여인원 및 문화예술활동 경력
- 공간 현황 및 시설 임차 · 소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증빙자료
-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법적 증빙 서류(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
- 사업성과

② 프레젠테이션 발표 자료(자유양식, 5분 이내 발표)
※ 작은예술공간프로그램 제외

공통 유의 사항

-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가 누락됐을 경우 심의에서 탈락하므로 유의
- 첨부파일 (URL링크, 영상, 음원파일 등)이 최종 제출하는 지원신청서 내에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 제출자료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지원신청 시 반드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지정양식 준수 필수/ 총 용량은 최대 100MB 까지 첨부 가능)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내정보방'내 회원정보' 반드시 작성 및 최신 정보로 수정
- 단체의 증빙자료에서 주최, 주관이 다른 경우에 "주관"만 인정

심의 절차

1차 행정심의	>	2차 심의	>	3차 심의	>	4차 심의
신청 자격 및 필수 제출자료 확인		**지원신청서 심의**		**PT 발표 및 인터뷰 / 현장실사**		**전문가 종합 심의**
지원 부적격자 및 필수 제출자료 미제출 시 탈락		심의기준에 따른 서류 심의		사업내용을 PT발표하고 심의 기준에 따른 인터뷰 심의		지원금 의결

※ 심의위원회 5인 이상 구성 시 최고, 최저점 제외하여 평균점수를 산술
※ 코로나19 관련 정부대응 조치에 따라 심의방식과 절차가 변경될 수 있음
※ 2021년 지원사업자가 2022년에 지원신청한 경우, 심의위원 심의 결과에 전년도 평가 등급에 따른 점수(+3점~-2점)를 합산
※ 서류 심의를 통해 인터뷰 심의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인터뷰 대상자는 개별 연락 예정 (작은예술공간프로그램지원은 인터뷰 심의를 진행하지 않음)

심의 기준

심의기준	가중치	주요 심의내용
지원목적의 적합성	20	• 지원사업의 목적과 대상에 부합하는가? • 사업계획을 통해 도달하려는 목표와 수준은 적절한가?
사업의 충실성/기획력	40	• 사업계획은 주제가 명확하며,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사업 목표와 수준이 적절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사업내용이 얼마나 독창적이며 기획력이 있는가? • 예산은 사업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
사업 수행역량	30	• 신청예술단체은 신청사업을 수행할 예술적 역량이 있는가? • 프로그램에 대한 예술적 고민과 시각의 차별성과 실행력이 있는가? • 사업참여인력의 역량과 사업실적, 경력이 사업을 수행할 만한가? • 공간의 시설과 규모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절한가?
기대되는 성과	10	• 사업계획은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공간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사업계획을 통해 해당 공간의 자생력과 성장 기반을 갖추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Ⅵ 국제예술교류지원

• 국내 · 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예술교류활동을 통한 예술인(단체)의 국제적인 활동기반 구축 및 예술역량 강화

지원 방침

• 예술인(단체)의 창작 · 발표 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 사업의 예술성, 수행역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여부 및 지원금 결정

지원 신청 자격

• 개인 : 최근 5년간(2017~2021년) 지원 해당 분야 기획 경력이 2회 이상 제주 소재(거주) 예술인
• 단체 : 최근 5년간(2017~2021년) 해당분야 2회 이상 실적이 있는 제주 소재 예술단체

지원 대상

• 2022.12.31.까지 완료가 가능한 사업
– 공신력 있는 국외 기관, 단체와 공동제작 및 발표
– 국외에서 개최하는 예술사업 참가(공연, 전시, 세미나, 비엔날레, 워크숍, 축제 등)
– 국외 레시던스 프로그램 참가
–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해외예술가(단체) 및 국외기관, 단체와 공동제작 및 발표

• 지원신청할 수 없는 사업
– 친목 성격의 초청성 교류 행사
– 단순 초청으로 구성된 형식적 교류활동
– 해외 교민 대상 위문 공연 형태의 사업 등

지원 규모

• 최대 2,000만원

지원 항목

• 국제예술교류사업 진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 항공비(운송비), 숙박비, 행사홍보비, 사례비, 장소대관료, 임차료, 통 · 번역비, 국외여비(항공료, 현지숙박비, 교통비) 참가비용

① 국내여비	– 국내 도시 간 항공료(제주–사업 파트너간 국가(도시)간 직항 노선이 없을 경우)
② 국외여비	– 항공료: 한국–사업 파트너간 국가(도시)간 국제 항공료(※ 이코노미석 기준) – 숙박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현지 숙박비(현지에서 사용되는 식비 예산편성 불가) – 현지교통비: 현지 체류기간 중 교통비
③ 임차료	– 온라인 기반 사업 진행시 사업 기간내 웹 호스팅 비용

– 신청사업의 내용과 규모,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결정
– 단체운영 · 경상경비는 지원불가
※ 법인단체 사례비(직접적인 활동(기획, 연출 등)을 한 경우)는 총 지원금의 20%이내 편성 가능
※ 해외 입출국 시, 코로나19 관련 국가별 조치에 따른 자가격리 비용은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제출 자료

① 지원신청서(지정서식 다운로드 : 재단 홈페이지)
– 신청개요
– 사업계획서
– 사업 참여 인원 및 문화예술활동 경력
– (단체)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법적 증빙 서류(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
– 사업성과
② 프레젠테이션 발표 자료(자유양식)

공통 유의 사항

-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가 누락됐을 경우 심의에서 탈락하므로 유의
- 첨부파일 (URL링크, 영상, 음원파일 등)이 최종 제출하는 지원신청서 내에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 제출자료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지원신청 시 반드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지정양식 준수 필수/ 총 용량은 최대 100MB 까지 첨부 가능)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내정보방'내 회원정보' 반드시 작성 및 최신 정보로 수정
- 단체의 증빙자료에서 주최, 주관이 다른 경우에 "주관"만 인정

심의 절차

1차 행정심의	>	2차 심의	>	3차 심의	>	4차 심의
신청 자격 및 필수 제출자료 확인		**지원신청서 심의**		**PT 발표 및 인터뷰**		**전문가 종합 심의**
지원 부적격자 및 필수 제출자료 미제출 시 탈락		심의기준에 따른 서류 심의		사업내용을 PT발표하고 심의 기준에 따른 인터뷰 심의		지원금 의결

※ 심의위원회 5인 이상 구성 시 최고, 최저점 제외하여 평균점수를 산술
※ 코로나19 관련 정부대응 조치에 따라 심의방식과 절차가 변경될 수 있음
※ 2021년 지원사업자가 2022년에 지원신청한 경우, 심의위원 심의 결과에 전년도 평가 등급에 따른 점수 (+3점~-2점)를 합산
※ 서류 심의를 통해 인터뷰 심의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인터뷰 대상자는 개별 연락 예정

심의 기준

심의지표	가중치	주요 심의내용
지원목적의 적합성	20	• 지원사업의 목적과 대상에 부합하는가? •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은 적절한가?
사업의 예술성/충실성	40	• 사업계획은 주제가 명확하며,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사업내용이 얼마나 예술적이고 독창적인가? • 예산의 세부항목과 금액이 사업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
사업 수행역량	30	• 신청 예술인(단체)은 신청 사업을 수행할 예술적 역량이 있는가? • 신청사업의 해외 파트너는 해당 교류사업에 적합하고 신뢰할 만한가?
기대되는 성과	10	•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외 파급효과를 기대할 만한가?

제주문화예술재단

6319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

Tel. (예술지원팀) 064-800-9130~7

Fax. 064-800-9105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1577-8751

제주 예술인들을 위한!

2022 제주 예술인 복지사업

#기본조건 #어렵다고_포기하지마세요!

예술인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조건!!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 발급 신청대행 서비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나섰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행하는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발급 신청 대행 서비스입니다.
11개 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술분야] 문학, 미술(미술일반,디자인·공예,전통미술), 사진, 건축, 무용, 음악(음악일반,대중음악), 국악, 연극, 영화, 연예(방송,공연), 만화

[활동유형] 창작, 실연,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 혹은 기획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 방문예약 신청 후 예술활동 증빙자료를 지참해 재단을 방문해주세요!

Q&A 신청대행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화로 사전에 방문예약을 해야 합니다.
- 전화로 방문 예약시 장르별 증빙자료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Q&A 예술활동증명, 어떻게 활용하나요?

-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시, 재직증명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정부의 행복주택 신청자격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예술인패스를 발급받아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연료 할인을 누릴 수 있습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복지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예술활동증명에 소요되는 기간은 10~15주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는 제주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술인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예술활동증명 발급 신청대행 서비스
- 제주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사업
- 제주 문화예술인 창작융자 지원사업
- 의료비 지원사업
- 제주예술경영 컨설팅
- 권익보호 및 역량강화 교육 아트내비(ART NAVI)

#예술활동준비 #예술활동지속

제주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예술인들을 위해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제주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창작활동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규모] 1인, 2,000,000원

[지원방식] 공모 후 선정

[지원대상]

- 주소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유효기간이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유효해야 함.**
- 기준소득: 가구원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전년도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가구원범위: 신청인 및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 배우자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지정 월) 기준 중위소득 150%(신청인이 가입자) 또는 180%(신청인이 피부양자) 이하 예술인

Q&A 공모 추진시기,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IIII 공모 추진시 재단 홈페이지, SNS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Q&A 창작활동준비금 지원은 결과물을 어떻게 제출하나요?

IIII 사업비 정산서류없이 예술활동보고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창작환경개선 #제주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도내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여건을 위한

제주문화예술인 창작융자 지원사업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여건 마련 및 예술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창작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대상] 아래 3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거주)
- 「예술인 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 발급자(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문화예술인 활동증명서 발급자(제주문화예술재단)
- 문화예술 분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영위 중인 예술인

[융자분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분야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국악,사진,건축,어문,출판 및 만화

[융자대상사업]

- 운영자금: 문화예술 창작공간 매입비, 임차료, 전시, 공연 등 창작활동 운영자금
- 시설자금: 문화예술 창작공간 시설 신축 또는 개보수
  * 창작공간: 문화예술 작업 활동을 위한 작업실, 연습실, 발표공간, 교육장 등

[융자한도] 1억원 범위 내 (개인별 담보능력,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대출금리] 신용등급별 금리 차등 적용
[지원내용] 이자 전액 지원 (연체이자는 본인 부담)

Q&A 접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IIII 창작융자 이자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제주의료원 #의료비_감면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제주의료원이 함께하는

의료비 지원사업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지속적인 예술활동 기반 강화 및 예술인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제주의료원과 협약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 제주의료원 외래진료, 건강검진시 20% 감면
- 제주의료원 분향실 사용료 50% 감면 (의료지원대상 및 직계가족에 한함)

Q&A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IIII 예술활동증명 발급을 완료하고, 도내에 거주하는 예술인이어야 합니다.

Q&A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IIII 제주의료원 방문시 예술활동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거주지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발생하는_다양한_이슈 #무료_온라인_상담
#법률 #세무회계 #인사노무 #문화예술일반

예술인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제주예술경영 컨설팅

예술현장에서 예술인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분야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문분야 : 법률, 세무회계, 인사노무, 문화예술 일반)

Q&A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IIII 제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및 단체입니다.

Q&A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IIII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 〉 사업소개 〉 예술인 복지 〉 지원사업 안내 〉 제주예술경영 컨설팅 하단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상시이며 신청이 접수가 되면 컨설턴트를 통해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ART_NAVI #길잡이교육

권익보호 및 역량강화 교육
아트내비(ART NAVI)

예술인 권익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예술인 창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A 프로그램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IIII 2022년 프로그램 확정이 되면 홈페이지 또는 SNS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Q&A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IIII SNS, 홈페이지의 링크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지원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 6층
문의 064-800-9132, 9134

JFAC 제주문화예술재단
Jej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